

고성군 해양치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(변경)

(의안번호 제3099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6. 4. 24.

고성군수

나. 회부일자: 2026. 4. 24.

다. 상정·의결일자: 2026. 5. 7.

기획행정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관광진흥과장 노석철)

가. 제안이유

- 제306회 고성군의회(제2차 정례회) 2025. 12. 8. 원안 가결된 「고성군 해양치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(변경)」과 관련
- 고성군 해양치유센터의 효율적·안정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변경 동의를 구하고자 함

나. 위탁근거

- 「고성군 해양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」 제10조(위탁운영)
- 「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), 제5조(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), 제6조(군의회 동의 및 보고)

다. 주요내용

1) 위탁사무명: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관리 및 운영

2) 위탁대상: 고성군 해양치유센터

가) 위치: 고성군 하일면 송천리(자란도) 108번지 일원

나) 연면적: 6,080.95㎡(대지면적 19,385.00㎡)

다) 시설규모: 1개동(지하 1층, 지상 3층)

- 지하 1층: 기계실, 전기실

- 1층: 세탁실, 검사실, 상담실, 탈의실, 샤워실, 1층 근린생활시설, 린넨창고, 식당 등

- 보직순환을 하는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사업수익 및 센터 활성화 등의 안정적 운영·관리가 어려움
- 해양치유센터의 운영은 전문 기업·단체에 민간위탁하여 시행하되, 해양치유 프로그램 및 제품개발, 시설물 관리는 고성군에서 시행

7) 연도별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(변경)

가) 변경내역

(단위: 천원)

구분	당초	변경	비고
소요예산	837,250천원	1,000,000천원 / 년	
정산방법	상계처리 원칙, 최초 1년간 손실액 조건부 보전	상계처리 원칙 (전문업체 검토 후 타당성 인정시)	

- 변경사유: 해양치유센터의 매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, 위탁운영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, 시설의 지속적·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손실보전금 일부(1,000백만 원 이내/년)를 예산 지원

나) 위탁연도별 소요예산

(단위: 천 원)

연도별	2026년(Y)	2027년(Y+1)	2028년(Y+2)	비고
	1~12개월	13~24개월	25~36개월	
당초	837,250	-	-	최초 1년 지원
변경	1,000,000	1,000,000	1,000,000	

다) 산출근거: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위탁수수료 원가계산 용역(2025)

- 운영원가 상세내역(2026년 소요예산 기준)

구분		금액(원)	비고
총계		3,103,197,418	수탁자 운영비 + 군 부담분
인건비		1,176,776,683	▲25명 기준
운영비	복리후생비	149,900,000	▲25명 기준
	보험료	112,754,145	▲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
	교육훈련비	36,377,333	▲직무교육, CS교육
	통신비, 세금과공과	29,925,842	
	임차료, 유류비	200,356,400	▲선박, 차량(1톤 트럭) 등 임차비
	수리수선비	25,958,151	▲소규모 수선비
	소모품비	230,365,843	▲객실, 프로그램실, 화장실 등 운영물품 구입
	사무용품비	6,022,152	
	홍보비	30,128,386	▲ 홍보물품 구입 및 홍보업무 추진
	기타경비	174,231,455	▲ 카드기맹점 수수료, 청소용역 등
순원가(인건비+운영비)		2,172,796,390	
일반관리비	5%	108,639,820	▲ 순원가의 5%
이윤	7%	159,700,535	▲ 순원가 + 일반관리비의 7%
운영원가(순원가+일반관리비+이윤)		2,441,136,744	
부가가치세	10%	244,113,674	▲운영원가의 10%
소계(운영원가+부가가치세)		2,685,250,418	※ 수탁자 운영비

2026년 예산 편성 (군부담)	지급수수료(유지보수)	42,200,000	※ 2026년 당초예산 편성내역 ▲ 초기 전문인력 기술교육(4개월): 1억원 ▲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(8개월분): 28억원
	초기교육비	100,000,000	
	전력비	233,739,000	
	수도광열비	42,008,000	
	소계	417,947,000	

※ 가동률에 따른 운영수지추정

(단위: 천 원)

가동률	테라피 이용수입		롱텀케어센터		연간매출 (a)	연간비용 (b)	운영수지 (a-b)	비고
	자유의바다	고성의바다	2인실	4인실				
100%	1,781,200	1,781,200	2,690,050	489,100	6,741,550	3,186,413	3,555,137	
47.3%	841,889	841,889	1,013,535	489,100	3,186,413	3,186,413	손익분기점	
27.4%	488,264	488,264	382,372	489,100	1,848,000	3,186,413	△1,338,413	당초
25%	445,300	445,300	672,513	122,275	1,685,388	3,186,413	△1,501,026	변경
20%	356,240	356,240	146,730	489,100	1,348,310	3,186,413	△1,838,103	

8) 위탁의 적정성 검토: 적정

검토항목	검토내용
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▲ 해양치유와 관련한 전문성과 능률성이 요구되는 사무로, 사적 수익을 위한 사용 수익허가나 민간 주도로 추진하는 보조사업과는 성격을 달리함 ▲ 직영 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인력 확보가 어려우며, 보직순환 등으로 안정적인 운영·관리가 어려움
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▲ 관련 조례에 따른 요금 책정 및 운영으로 공공성이 확보 ▲ 공익적 측면에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에 따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기관 선정을 통해 서비스의 질적 측면에서 안정성 확보 ▲ 해양치유센터 종합경영관리 매뉴얼 개발 용역 시행으로 일관성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
③ 경제적 효율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▲ 직영 시 추가 (전문)전담인력 채용으로 인한 정원 증원 및 추가 예산 확보 등 행정의 부담 가중 ▲ 민간위탁 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에 따른 가동률 및 경제적 효율성 제고 가능
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▲ 해양치유 분야의 전문성 및 시설 운영 경험을 통한 시설 활성화 유도 및 양질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 가능
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▲ 이용객 수, 예약 건수, 운영수익 등의 지표를 활용한 정량적 성과 측정 가능
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▲ 공무원 인력(1팀, 5명)을 함께 배치하여 지도감독 및 행정업무 지원을 통한 시설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
⑦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▲ 해양치유산업은 신사업으로, 해수부에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5개 지자체(고성, 완도, 태안, 울진, 제주)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 ▲ 이후 해양치유의 저변 확산과 다양한 해양치유사업 모델 개발로 관광사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

3. 추진경과 및 일정

- 가. 2026. 4. ~ 5.: 해양치유센터 운영 위탁 사업자 공모
- 나. 2026. 5.: 해양치유센터 운영 위탁 군의회 변경 동의안 제출
- 다. 2026. 6.: 사업자 확정 및 위수탁 계약 체결
- 라. 2026. 7. ~ 10.: 전문인력 양성교육 및 인력채용(수탁자)

4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: 허수은)

가. 주요 내용 검토

- (위탁기간) 2년 11개월(2026.2.~2028.12.)에서 3년(2026.10.~2028.9.)으로 조정된 것으로 운영 개시 시점 및 회계연도 기준 정산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함.
- (위탁예산)은 최초 1년 837,250천 원에서 연간 1,000,000천 원 이내로 확대되어 3년간 최대 3,000,000천 원 지원 구조로 변경됨. 1년 차 기준 162,750천 원(19.4%) 증액된 수준이며, 다년도 지원체제로 전환된 것이 주요 내용으로 아울러 정산은 상계 원칙을 유지하되 검증을 전제로 재정지원이 가능하게 하여 수탁자의 초기 운영 부담을 완화한 것으로 판단됨.

- (운영수지) 연간 운영원가는 3,186,413천 원이며, 손익분기점은 가동률 47.3% 수준으로 가동률 27.4% 기준 △1,338,413천 원, 20% 기준 △1,838,103천 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등 초기 수익성 확보는 어려운 구조로 보이며, 이에 연간 1,000,000천 원 지원은 초기 운영 안정화를 위한 필요 수준으로 판단됨.
- (관리) 손실보전은 전문기관 검증을 전제로 하여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투명성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됨.
- (법령적용) 민간위탁과 행정재산 관리위탁이 병행되는 구조로 「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」 제10조제5항에 따라 행정재산 관리위탁 관련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 법령과 기준에 부합하는 계약 및 운영관리가 필요함.
- (기타) 위탁조건 조정은 사업 여건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, 향후 사전 검토를 통해 운영계획의 안정성 확보가 필요함. 또한 해양치유사업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민간위탁 방식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.

나. 종합검토 의견

- 본 동의안은 초기 운영 여건과 수요 불확실성을 반영한 조정으로 타당함. 다만 가동률을 고려할 때 일정 기간 재정지원이 불가피하므로, 향후 운영 효율성 제고를 통해 재정의존도 완화가 필요함. 아울러 법령 준수 및 사전검토 강화를 통해 사업 안정성과 재정 효율성 확보가 요구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6. 토 론: 없음

7. 심사결과: 2026. 5. 7.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